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 정책토론회 토론문

최명진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 코로나19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응

1. 코로나 전담중재부 설치, 운영

올해 1월 말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1월 30일 우한 교민 입국·격리, 2월 18일 신천지 관련 확진자 발생, 2월 20일 국내 첫 사망자 발표 등을 계기로 코로나 관련 언론보도가 급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코로나 보도와 관련한 언론분쟁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3월 5일부터 코로나 관련 사건 전담중재부(서울제5중재부)를 지정, 운영 중에 있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제5조 ③ “위원장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중재부를 지정, 운용할 수 있다.

3월부터 10월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코로나 관련 조정신청 사건은 총 107건이며, 코로나 전담중재부가 처리한 사건은 78건이며, 나머지 29건은 지역중재부(부산 1건, 대구 5건, 광주 1건, 대전 14건, 경기 5건, 충북 3건)에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전담중재부의 코로나 관련 사건 평균처리기한은 13.5일로 올해 일반사건 처리평균기한 약 18일보다 약 5일 빠르게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차별, 혐오 관련 시정권고 강화

위원회 시정권고의 기준이 되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에는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종교 비방금지’와 ‘지역감정 조장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심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05년에 삭제되었다. 이후 2016년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19년 3월에는 차별금지 대상에 국적, 지역, 나이 등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의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2019년 혐오,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 결정을 한 사례는 9건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와 관련한 차별, 혐오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시정권고 결정을 취하고 있다. 올해 10차까지 진행된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차별, 혐오를 근거로 시정권고를 한 사례는 총 110건이며, 이 중 코로나 관련 사안은 100건으로 나타났다.

혐오, 차별과 관련한 시정권고는 지난 5월 대규모 이태원 코로나 감염 사태 관련 게이클럽 보도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가 8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는 코로나를 대구 코로나로 지칭하거나, 중국인 차별 표현, 마스크 안 쓰는 노인 표현 등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이 이뤄졌다.

○ 보건 위기 속 언론보도,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1. 속보성과 정확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 과 ‘사회재난’ 으로 나누고 ‘자연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가뭄,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인 코로나의 확산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므로, 언론보도 역시 재난 상황에 따른 역할을 부여 받는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한정된 기간 내 폭발적 영향력으로 단기적, 지역적 피해를 일으키는 반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발생 지역의 광범위함, 발생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누적 피해가 강하다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보도는 이러한 누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전염병은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빨리 차단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확진자의 동선 등과 같이 접촉 차단을 위한 정보는 속보성이 우선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역 정책, 코로나 발생 현황과 같은 사안들은 성급한 보도로 인한 오보가 더 큰 혼란을 주고 방역 노력

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속보성보다는 정확성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의 보도라고 하여 모두 신속성이 우선될 수는 없고, 각 재난상황의 특성과 사안에 따라 신속성과 정확성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판단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와 알권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방역 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인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위기상황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안전(생명권)을 위한 알권리가 개인의 사생활에 우선하는 가치를 가진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개인정보의 공개가 개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 이어진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확진자는 새벽에 지인과 함께 숙박업소를 찾았다는 이유로 대중의 입길에 올랐으며, 노래방을 수차례 방문한 확진자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냐는 댓글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처제와 식당에 간 확진자는 불륜이 아니냐는 억측에 시달리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보도로 공개된 동선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지속시킨다는 점이다. 정보가 쉽고 빠르게 전달되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게 된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공동체 안전을 위한 알권리의 균형을 찾음에 있어 우리는 오히려 인터넷의 특성을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론의 확진자 동선 보도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공개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론은 코로나 등과 같은 감염병 보도를 함에 있어 그 발생 사실과 같은 일반적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도하되, 확진자의 동선 정보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공개 홈페이지 주소만 링크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진자 동선을 예방에 필요한 기한 이후에는 삭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독자들이 발생 장소를 필요한 기간(코로나의 경우 14일) 동안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남아 피해를 야기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 위기 속 언론보도, 어떻게 차별과 혐오를 강화했는가

1. 위기 상황과 특정 집단의 몽타주

영화에서 몽타주 기법은 각각의 독립된 장면을 이어 붙여 연관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

을 뜻한다. A라는 장면과 B라는 장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두 장면을 이어 붙임으로 A와 B를 연결된 스토리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이러한 몽타주 효과에 의해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매일 많은 보도를 접하고 해석하게 된다.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라 할지라도 해당 보도는 완벽히 개별적이고 독립된 정보로 읽히지 않는다. 당시의 사회적 이슈, 함께 배치된 기사 등 바탕 된 맥락 속에서 기사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말 한 언론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의 풍경을 스케치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위생관념 부족 … 손으로 거리음식 만지작’, ‘길 바닥에 가래침 함부로 뱉는 위험천만’ 등의 소제목과 함께 본문에는 “마스크 대란에도 한국 체류 중국인들이 위생에 둔감한 현실을 반영하듯, 역 주변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서자 우한 폐렴을 무색하게 하는 비위생적 행태가 즐비했다”, “일부 행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중국인 또는 화교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았다” 라고 적었다.

이러한 기사를 읽는 독자는 대림동 상인과 거주자들의 위생관념이 다소 부족하고, 마스크를 착용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했다는 맥락과 합쳐져 해석된다. 이를 통해 기사는 독자에게 중국인과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이 국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인 또는 화교의 위생관념 부족이 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것이다.

5월 연휴에 발생한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도 동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은 클럽이 ‘밀집 접촉 시설’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했음에도 언론들은 단순히 클럽이 아닌 ‘케이 클럽’에서 발생했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이후 일부 언론은 코로나 감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소수자들의 전용 시설 이용 형태 등만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는 앞선 예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기사로 읽히지 않는다. 물론, 개별 기사도 차별과 혐오적 시선에서 작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사는 코로나 확산 장소라는 맥락과 함께 성소수자의 행태가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소수자는 향후 반발 가능성이 낮아 쉽게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며, 소수자에 대한 기사는 사회적 맥락과 합쳐질 때 부당한 차별과 혐오가 강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위험 요인 자체가 아닌 발생한 위험의 외형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집단을 부각하는 것이 당시의 맥락과 합쳐져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도치 않는 피해가 소수자에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부추겨진 세대, 성별 혐오

‘자가격리 기간에도 수차례 스타벅스 간 20대 여성 결국...’, ‘“나 확진자야” ... 지하철서 난동부린 50대男 코로나 음성’, ‘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 60대 남성 구속’ 등은 언론이 코로나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용한 제목들이다.

이 기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나이, 성별을 밝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달된다. ①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외출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확진을 받기까지 했고, 결국 1000만 원의 벌금까지 물게 되었다는 사실 ②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일부 승객을 폭행한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③ 마스크 착용을 올바르게 해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리면서 굳이 나이와 성별의 공개가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나이와 성별의 공개는 보도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대와 성별에 대한 혐오와 차별만 유발할 위험이 있다. ‘자가격리 기간에 수차례 스타벅스 간 20대 여성’ 제목의 기사는 자가격리 의무기간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대신 20대, 여성은 공동체 의식이 없고 무분별하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혐오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 확진자야” ... 지하철서 난동부린 50대男 코로나 음성’, ‘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 60대 남성 구속’ 제목의 기사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 대신 50대, 60대 남성은 난동이나 부리는 막무가내 세대라는 혐오적 인식만 심어준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

우리 언론은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나이와 성별의 표시를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로서 기사 신뢰를 높이는 장치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가 항상 유용한 장치로서 작동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선 예시들 같은 상황에서 사용된 나이와 성별의 표시는 오히려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까지 덮어버리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언론보도의 신뢰와 품격, 언론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코로나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이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면이다. 코로나와 관련한 보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한국과학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는 지난 4월 28일 공동으로 ‘감염병보도준칙’을 내놓았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가 발생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언론인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까지 마련했다는 점만으로도 우리 언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준수여부다. 감염병보도준칙은 전문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언론인도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사 작성 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 구성된 세부 사항들이 기사 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지켜지기만 한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논란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선 기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보도에 대한 데스크의 올바른 방향 설정도 중요한 요소다. 알 권리와 사생활을 훑쳐보는 관음증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고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고민의 산물로서 보도를 내놓아야 하다. 단편적인 사실을 쪼개 만든 자극적 보도를 통해 독자 또는 시청자의 주목을 끌거나, 단독보도의 유혹에 현혹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급히 공개하는 일은 자제하여야 한다. 신속히 공개해야 할 내용과 정확성을 기해야 할 사안을 가려내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당 보도가 차별과 혐오를 불러오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언론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방역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얻을 수 있는 신뢰와 품격은 이미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